

.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

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

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체계적인하천정비추진 사업외 2 건인

3,389,982,750 원으로서

- o 명시이월 (2 건) 3,087,451,750 원
- o 사고이월 (1 건) 302,531,000 원
- o 계속비이월 (0 건) 0 원이며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